

전임대우교수 규정

□ 제정 : 2009. 2. 13.

□ 개정 : 2012. 6. 29.

□ 개정 : 2020. 11. 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대우교수의 자격,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 의한 전임대우교수는 총장이 부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임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조건, 보수,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직위) 삭제

제4조(자격) 전임대우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창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(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도 가능)
- ②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제5조(의무) ① 전임대우교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전임대우교수는 본교에서 요청하는 특강, 초청세미나 및 총장이 부의하는 활동을 통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용절차) 전임대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.

제7조(임용기간) ① 전임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1년씩 연장 임용할 수 있다.

- ② 전임대우교수는 다시 임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8조(임용계약) ① 임용계약은 총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

- 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.
 - 1. 임용기간
 - 2. 급여내역
 - 3.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

제9조(신분) ① 전임대우교수는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

4-1-16 전임대우교수 규정

다. 다만,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전임대우교수는 교수회의를 비롯한 제반 공식기구와 의식의 참여에서 제외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(휴직) 전임대우교수는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.

제11조(처우) 전임대우교수의 보수는 연봉액을 별도로 정한 후 매월 분할 지급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, 고운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